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교 포함 통상교섭 외교부·산업부 공동지휘 등〉

■ 김건·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33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 확대	5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3. 외교교섭이 포함된 통상교섭 공동 지휘·감독	9

I. 제안 및 회부

1. 제안자 : 김건 · 홍기원의원 등 11인

2. 제안일자 : 2025년 6월 27일

3. 회부일자 : 2025년 6월 30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대표 · 특별사절의 임명 · 권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대표 · 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는 한편,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 · 감독하도록 하되,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 ·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외교교섭의 주체로서 활동 중인 다양한 행위자 (미승인 국가 · 정부,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의 경우 현행 정부대표 · 특별사절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제적 협상에 참여하여 조약문안에 가서 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한편, 통상교섭의 경우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독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교교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하도록 하고, 정부대표·특별사절의 임명·권한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교 및 통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 및 제11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김건·홍기원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①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③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 및 제11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u>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u>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u>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u> 전하거나 <u>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u>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제1조(목적) ----- ----- <u>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단체(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와</u> ----- ----- ----- ----- ----- <u>외국정부</u> <u>등에 전하거나 외국정부등과</u> ----- ----- ----- -----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狀)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정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조

-----.

제1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외교부장관) -----
외국정부등과의-----

-----.

제4조(재외공관의 장) -----

-----외국정부등과

-----.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

-----외국정부등과

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에 외교교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외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1.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 확대

현행법은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¹⁾하고 있음. 그런데 미승인 국가·정부,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도 국제사회에서 외교교섭의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체로 활동 중임에도 현행 교섭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개정안 제1조는 이러한 비전통적인 교섭대상을 현행 정부대표·특별사절의 교섭대상에 추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교섭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이미 실무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들과 교섭을 진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반영한 입법적 보완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짐.

< 외국정부·국제기구 외 교섭대상 목록 및 협상 사례 >

연번	분류	교섭대상	협상/교섭사례
1	국제기구 설립조약 없는 다자협의체	AI 글로벌 파트너십(GPAI)	이사회(21.6.30., 21.11.11.), 운영위원회(22.3.9.), 각료이사회(23.12.13.), 중간 서밋(24.7.3.-7.4.), 정상회의(24.12.3.-12.4.) 등
2		G20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 TF	1차 회의(25.2.25.-2.26.), 2차 회의(25.4.10.-4.11.), 3차 회의(25.6.12.-6.13.) 등
3		퀀텀개발그룹(QDG)	1차 회의(24.7.28.-7.30.), 2차회의(25.1.9.), 3차회의(25.3.23.-3.25.)
4		AI-바이오과학 협력 회의	1차 회의(24.10.31.-11.1.)
5		북극이사회	-
6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1차 정상회의(코펜하겐, 2018), 2차 정상회의(서울, 2021), 3차 정상회의(보고타, 2023), 4차 정상회의(하노이, 2025) 등
7		기후클럽(Climate Club)	1차 총회(화상, 2024.4.23.), 2차 총회(뉴욕, 2024.9.26.), 3차 총회(베를린, 2025.3.27.) 등

8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
9		민주주의 공동체(CoD)	-
10		분쟁하성폭력생존자기금(GSF)	-
11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 국제동맹	-
12		언론자유연대(MFC)	-
13		온라인자유연대(FOC)	-
14	미승인국/ 정부	아프가니스탄/탈레반	-

(자료: 외교부)

다만, 교섭대상 확대 과정에서 고려할 점도 있음. 개정안이 ‘이에 준하는 외국의 단체’까지 교섭대상으로 포괄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실무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등 현장의 자율적·창의적 외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단체’가 국제사회에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로 한정되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무 범위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거나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국제교류·협력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행위자들을 교섭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외교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임.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안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부 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제적 협상에 참여하여 조약문안에 가서명하는 사례 등²⁾으로 인하여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임.

현행법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대표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현행법 제2조로도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정부대표 행위의 법적 근거에 더해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을 정부대표·특별사절 관련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이 이미 정부대표 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³⁾이나 「한국은행법」⁴⁾과 같이 개별

2) 타부처에서 △정부대표 임명 없이 외국정부와 조약문안을 교섭하고 가서명까지 완료한 뒤에야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례, △외국정부와의 양자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을 당일에야 외교부에 통보하고 정부대표 임명없이 해당 부처 고위급이 참석한 사례, △국제회의에 정부대표 임명 없이 참석한 사례 등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정부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법률도 존재하는 만큼, 모든 경우에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 내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 특히 남북관계, 금융·경제 등 특정 분야에서 이미 마련된 특수 규율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중복 규제나 권한 다툼을 초래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대표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별도의 우선 적용 조항 신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행 규정만으로도 외교적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우선 적용 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신설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동 조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외교교섭의 지휘·감독권이 외교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외교적 혼선을 방지하고 대외관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3. 외교교섭이 포함된 통상교섭 공동 지휘·감독

현행법은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4) 「한국은행법」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통상교섭의 경우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단독 지휘·감독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바,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일반적인 외교교섭의 절차는 ① 관계부처에서 외교부에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승인 요청을 하고, ② 외교부 장관이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을 재가하며, ③ 필요시 정부대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교섭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에 따르면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 통상교섭 체계는 외교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외교부는 관계부처로서 의견제출, 정부대표 임명, 외교채널 지원 등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상황⁵⁾이라고 함.

외교주체의 다변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외교 환경을 반영하여,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동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안보, 외교안보를 포괄하는 복합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교섭⁶⁾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각각의 전문성과 재외공관 조직인

5) 외교부는 현 「정부대표법」 제11조에 따라 산업부가 외교부에 통보하는 지휘·감독의 내용은 1~2쪽 내외의 간략한 훈령 형태로 실제 교섭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통상조약 합의/가서명시 의견 청취도 사실상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실질적 의견 개진 애로가 있다고 설명함.

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동 조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음.

먼저, 동 조항 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통상교섭 과정에서 외교부장관이 현행법 상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현행법 제11조⁷⁾는 통상교섭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감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 조항이 제19대국회에서 신설⁸⁾될 당시 「정부조직법」이 외교통상부에서 수행 중이던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를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6) 한미 관세협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등

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1903514]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등 148인) 수정가결(2013.3.22.)

데 따른 것임.

당시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한 것은 실물경제와 통상교섭을 연계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장에서 협상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는 데 대해 교섭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통상교섭에 한해서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임.

즉, 현행법 하에서도 이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외교부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부처간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것을 입법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통상교섭 지휘·감독 체계 하 외교부와의 협의 절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바,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협상 개최 및 타결’ 과정에 외교부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음.

- | |
|--|
| <p>(FTA) ▷ 교섭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개시 전 국내절차 진행
 (타당성 평가, 공청회등)
⇒ ▷ 협상 타결 전 외교부 등이 포함된 대외경제장관회의⁹⁾ 심의·의결
⇒ ▷ 협상 개최 및 타결 이후 외교부 협의 하 국내절차 진행
 (법률검토·서명·비준 등)
⇒ ▷ 이행위원회를 통해 협정 이행상황 점검</p> |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외교부장관에게 통상교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정부조직법」의 부처별 소관사무¹⁰⁾에 대한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외교교섭이 포함되어 있는 통상교섭에 한하여 외교부장관에 공동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외교교섭’의 범위와 ‘외교교섭이 포함되어 있는 통상교섭’을 일반적인 통상교섭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앞에 밝힌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흐름이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외교교섭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교섭이 있을지 회의적이며,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

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5.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6. 대외경제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7.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심의·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8. 그밖에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③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이하 생략)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이하 생략)

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양 부처간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거나 양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각 통상교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는, 통상교섭에 대한 특례를 정한 현행법 제1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외교교섭이 포함된 통상교섭에 대해 또다시 특례를 정하는 개정안의 형식보다, 별도의 구분 없이 모든 통상교섭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는 방향으로 현행법 제11조제3항과 제4항을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동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개정취지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외교부는 동 조항 개정안에 대해 경제·안보 융합 추세에 따라 최근의 통상교섭은 고도의 외교적·정무적 판단이 요구됨을 감안, 외교교섭이 포함된 통상교섭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조항 개정안에 대해 ① 통상교섭의 특수성·전문성을 인정한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의 훼손 우려, ② 현 조항으로도 충분히 발의법안의 목적 달성 가능, ③ ‘외교교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의미의 불분명, ④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총괄 권한’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충돌 가능성, ⑤ 의사결정의 비효율과 혼선 초래

및 협상 대응 지연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같이 외교교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지휘·감독 체계에 관하여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바, 동 조항 신설 당시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 교섭현장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6